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(CCTV)에 기록된 영상기록 중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영상기록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48시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의3(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6조의3(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 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 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48시 간으로 한다.</u>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